

법령·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

2024. 9.

민생노동국

법령개정 건의사항

□ 건의 건수 : 총 1건(공정경제과)

(건의일자 : '24.6.26.)

연번	건의내용	소관부처
1	<p>< 프랜차이즈 전자정보공시제도 도입 ></p> 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개시 전 등록기관에 필수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고, 이후 1년마다 재무 상황 등을 갱신하는 정기변경과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수시변경을 실시하고 있음 ※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지자체 이양('19.1.1)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공개서 심사건수 증가로 심사 지연 우려됨 ※ 심사처리 건수: 연 8천여 건 ○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 내용의 오류로 신뢰도가 저하되어 예비창업자의 피해 발생 우려 ※ 가맹사업법: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맹본부의 '자기책임'으로 직접공시 및 '프랜차이즈 전자정보공시시스템' 구축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(가맹본부)신청→(지자체)심사보완→등록→공개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(가맹본부)등록→공사→(지자체)사후검증→행정조치</p> </div> <p>⇒ 가맹본부는 변동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고, 창업희망자는 즉시 조회 가능 (정보의 최신성 향상)</p> <p>□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(정보공개서의 등록 등) 	(공정거래위원회)

※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4조의 2(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의 보고)